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기·반송명령 의무자 추가 및 공무원 직접조치범위 확대〉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73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3
IV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진욱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9. 17.
3. 회 부 일 : 2025. 9. 18.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치 않은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수입·생산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 폐기·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폐기·반송 명령 이행 의무자가 소유자에 국한되어 있어 단순 구매자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반송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고,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방지를 위해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폐기·반송할 수 있는 경우가 소유자가 폐기·반송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

또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알지 못하고 소유한 선의의 피해자의 경우 해당 폐기·반송 명령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나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폐기·반송 의무자에 수입·판매자를 추가하고 수입·판매자의 경우 소유자 등에게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폐기·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 추가 및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회수·폐기·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수·폐기·반송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회수·폐기·반송 명령 등 정부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에 대한 피해복구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적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폐기·반송 의무자에 수입·판매자를 추가하고 ‘폐기·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추가함(안 제23조의2제1항).
- 나.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회수·폐기·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23조의2제2항).
- 다. 회수·폐기·반송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함(안 제23조의2제4항).
-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 마.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피해복구 의무규정을 마련함(안 제34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에 대한 폐기 등 의무범위 추가 및 회수명령 추가

개정안 제23조의2제1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등¹⁾에 대한 폐기·반송명령에 회수명령을 추가하고, 해당명령의 의무자 범위를 소유자에서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로 확대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u>폐기·반송</u>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u>소유자</u>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	제23조의2(<u>회수·폐기·반송</u> --) ① ----- ----- ----- <u>소유자 및</u> <u>수입·판매자(법인을 포함한다)</u> -----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폐기·반송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

1의2.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

3. 제17조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 생산승인, 개발·실험 승인 또는 이용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

현행	개정안
여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u>폐기·반송</u>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u>폐기·반송</u>을 명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회수·폐기·반송을 명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 ----- 회수·폐기----- -----.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에 대한 폐기·반송의무를 생물체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어서,

회수·폐기·반송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수입·판매자가 책임이 있고 구매·소유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판매자에 대해서는 동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못하는 반면에 구매·소유자가 폐기 및 반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수입·판매자에게 회수·폐기·반송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명령의 내용으로 폐기·반송 외에 회수를 추가하고 명령의 대상으로 소유자 외에 수입·판매자를 추가함으로써,

위법상태 유발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위법상태 제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주의원칙에 부합하는 동시에 명령의 이행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산업통상부 역시 개정안에 따라 회수, 폐기 및 반송명령의 의무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명령이행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2.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에 대한 공무원 직접 폐기·반송 등 사유 추가

개정안 제23조의2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등²⁾에 대해 소관 공무원이 직접 폐기·반송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유로 소유자가 폐기·반송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외에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를 알지 못하는 등으로 회수·폐기·반송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로 긴급한 경우를 추가하고,

이 때 폐기·반송 등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u>폐기·반송 명령</u>) ②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가 제</u>	제23조의2(<u>회수·폐기·반송 --</u>) ②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폐기·반송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

1의2.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

3. 제17조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 생산승인, 개발·실험 승인 또는 이용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

현행	개정안
<u>1항에 따른 폐기·반송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폐기·반송을 하게 할 수 있다.</u> <신 설>	<u>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회수·폐기·반송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회수·폐기·반송에 드는 비용을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u> 1. <u>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u> 2. <u>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u> 3. <u>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회수·폐기·반송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 ④ <u>제2항에 따른 회수·폐기·</u>

현행	개정안
	<u>반송에 드는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은 소유자가 폐기·반송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무원이 직접 폐기 또는 반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지를 알지 못하여 명령을 못하는 경우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폐기 또는 반송 등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관 공무원이 직접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회수·폐기 또는 반송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어서 폐기·반송명령을 할 수 없거나 긴급상황으로 폐기·반송명령의 이행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등의 상황³⁾에

3)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사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에 폐기·반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소유자와 수입·판매자 모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모두를 알지 못할 때에 공무원이 직접 폐기·반송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유자 또는 수입·판매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소유자 또는 수입·판매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 책임 있는 일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한 경우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소관 공무원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행위의 주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폐기·반송조치의 필요성 및 범위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⁴⁾, 국민에게 재산과 절차상의 부담을 가한다는 점⁵⁾ 등을 고려하여

4) 해양수산부 의견

5) 산업통상부 의견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소관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추가로 개정안은 폐기·반송 등에 드는 비용을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문언상 폐기·반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와 수입·판매자에게 병렬적·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23조의2제1항의 입법취지가 소유자 또는 수입·판매자 중 위법상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위법상태 제거에 따르는 책임을 묻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수·폐기·반송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소유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폐기·반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폐기·반송으로 인한 피해자손실보상 및 원인자 책임부담

개정안 제34조의2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폐기·반송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안 제35조의2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로 환경오염 등을 발생시킨 자에게 환경 회복과 복원에 따르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2(손실보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폐기·반송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폐기·반송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받을 유전자

현행	개정안
	<u>변형생물체 등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③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신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u> ④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회수·폐기·반송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자에 대한 보상을 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급한 손실보상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가 발생 원인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u> ⑤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3(발생 원인자의 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환경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법상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폐기하고 반송할 의무가 부여되나, 그와 같은 위법상태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 폐기·반송 등에 따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개정안 제34조의2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폐기·반송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발생원인자에게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도록 하는 내용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폐기·반송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은 법령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정당보상의 원칙⁶⁾에 따라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부는 책임없는 당사자가 손실을 본 경우 이를 보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국가가 선 보상 후 원인행위자에게 후 구상하는 것은 행정 및 예산 관점에서 행정기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원인행위자에 대한 담보설정·강제집행 등 제도적 보완과 보상금 관련 관련부처⁷⁾ 간 예산협의를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개정안 34조의3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로 환경오염 등을 발생시킨 자가 오염된 환경의 회복·복원 책임과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6)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하여 산업용(산업통상부), 농림축산산업용(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료기기용(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용(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환경부), 해양수산업용(해양수산부), 시험연구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용도별로 소관부처가 상이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⁸⁾에 부합하는 것으로, 동 법률에서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음⁹⁾을 고려할 때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부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법률에 선언적 규정만을 신설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환경복원 범위, 비용산정 기준, 이행절차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0

8)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